

제255회 정례회  
2006.12.14(목)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# 검토보고서



기획행정위원회  
전문위원 연기봉

#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6일

3. 제안이유

가.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.12.31 만료됨에 따라  
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을 2009.12.31로 변경하고

나.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,  
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 
개정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(안 제10조)

-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 
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 
감면

나.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추가  
(안 제11조)

-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  
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 추가

다.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(신설, 안 제11조의 2)

-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, 등록세 면제

라.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(안 제12조)

- 지방세법 제273조의2(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)신설에 따라 동일한 감면규정을 정비

마.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(안 제16조)

- 관련 법규정의 개정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감면규정 확대

## 5. 검토의견

가. 이번 조례개정은 현행 「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」의 적용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변경하고, 대중교통 지원 및 서민주택건설 지원,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

안 제10조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금까지는 「조세제한특례법」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,

※ 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(등록세의 면제 등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(제13호·제16호·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)한다.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~29 (생략)

30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

※ 조세제한특례법 第120條 (取得稅의 免除等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(제12호·제15호·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)한다.

1~13. (생략)

14.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

안 제11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은 조세 정의 및 도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이해가 됨.

안 제11조의2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(소량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)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## 다.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감면

안 제12조 ‘공동주택에 대한 감면’을 ‘주택에 대한 감면’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「지방세법」에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됨.

안 제16조 ‘재래시장 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’을 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’으로의 개정은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「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의 법률명칭이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됨.

#### 라.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

안 제2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은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적용기한은 부칙에서 정하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음.

#### 마. 도세감면 조례 적용기한 연장

도세감면은 감면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감면기한은 부칙에서 매 3년을 단위로 정하고 있음.

도세감면 내용중에는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서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과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조항,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존치되는 조항 등이 있으므로 조례자체의 감면기한인 3년이 종료되면 감면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게 됨.

따라서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를 다시 3년 연장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